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이 2011. 09. 16. 제정되어 2012. 03.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제8항에 따른 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사.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제출의견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아. 위원회 간사 및 처리사무를 정함(안 제10조)
자. 회의록 작성·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붙임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3. 03.07 ~ 2013. 03.26. (20일간)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결과요약서 (붙임 2)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3)
(5) 개별법령에 따른 입법 선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적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 현행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성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조사 사업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 향후 지적재조사 사업에 중요한 역할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입법 입안심사규정에 합당함으로 제정 시행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이 2011. 09. 16. 제정되어 2012. 03.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제11항에 따른 성주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성주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아. 이의신청 거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자. 위원회 간사 및 처리사무를 정함(안 제11조)
차. 회의록 작성·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붙임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5. 검토의견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경계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성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안 제3조 및 제4조)

- 구 성 : 11명이내
- 위원장 : 판사
- 위 원 : 5급이상 공무원,변호사,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 으로 구성하였으며,

○ 본 조례 제정으로 「성주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설정, 이의신청 등 합의경계선 도출 및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치입법 입안 심사 규정에 합당함으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이 2011. 09. 16. 제정되어 2012. 03.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성주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나. 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추진단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추진단의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마. 추진단의 조사·연구 및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붙임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적제조사 추진단 구성 으로 운영단장 및 팀장 1인, 단원에 대한 자격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기능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재조사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에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지적재조사측량검사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그 밖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치입법 입안심사규정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